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중구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12조).
- 라.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마.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바. 위원의 주의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62 팩스 : 02)3396-9055
- E-mail : seo3505@jungg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강현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
------------	---

발의연월일 : 2026년 7월 6일

발 의 자 : 강현미의원 외 2명

(문영회의원, 강운회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중구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12조).
- 라.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마.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바. 위원의 주의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5. 참고자료 :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란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를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3조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

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8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보조자를 둘 수 있으며,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의회 사무과 소속 의사담당 공무원 중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인사청문의 방식)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

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구청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이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4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청문회의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7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준용)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인사청문회) ②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붙임2

전국 지자체 조례 현황

(2026. 06. 30. 기준)

구분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 · 개정일
광역 (1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0-04 제정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0-11 제정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8-10 제정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5-07-18 제정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8-07 제정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0-06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0-04 제정
	경기도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1-10 제정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	2025-04-02 제정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1-03 제정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2-29 제정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	2023-12-08 제정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1-02 제정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9-25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1-04 전문개정
기초 (129)	서울 (13)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7-20 제정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7-13 제정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9-22 제정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9-22 제정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2-14 제정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2-28 제정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5-08-07 제정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5-16 제정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5-30 제정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5-09-12 제정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5-12-31 제정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5-06-12 제정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2-16 제정
	부산 (5)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0-11 제정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3-06 제정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3-26 제정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5-22 제정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5-08-12 제정

구분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개정일
	인천 (5)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9-21 제정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9-27 제정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1-17 제정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7-15 제정
		인천중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1-02 제정
	대구 (2)	군위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2-28 제정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2-28 제정
	광주 (4)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9-27 제정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8-14 제정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0-13 제정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1-13 제정
	울산 (1)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5-05-08 제정
	강원 (12)	춘천시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1-16 제정
		원주시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1-10 제정
		양양군	양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1-20 제정
		고성군	고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5-07-11 제정
		정선군	정선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2-23 제정
		태백시	태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3-29 제정
		양구군	양구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4-05 제정
		인제군	인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7-04 제정
		철원군	철원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9-25 제정
		횡성군	횡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4-09 제정
		속초시	속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12-31 제정
		평창군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4-05 제정
	경기 (24)	수원시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7-12 제정
		하남시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5-01 제정
		화성시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8-04 제정
		파주시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9-22 제정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9-22 제정
		의왕시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9-27 제정
		구리시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0-06 제정
		안산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1-08 제정
		가평군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1-08 제정
		고양시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1-10 제정

구분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개정일
		안양시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0-10 제정
		평택시	평택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0-24 제정
		오산시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1-01 제정
		군포시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2-12 제정
		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2-19 제정
		여주시	여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2-27 제정
		광명시	광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2-28 제정
		양평군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3-13 제정
		과천시	과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3-22 제정
		시흥시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6-13 제정
		이천시	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5-05-16 제정
		부천시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6-28 제정
		안성시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3-15 제정
		연천군	연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11-19 제정
	충북 (9)	제천시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0-13 제정
		옥천군	옥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1-20 제정
		진천군	진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2-27 제정
		증평군	증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8-09 제정
		청주시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5-07-11 제정
		괴산군	괴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3-15 제정
		영동군	영동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7-15 제정
		음성군	음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0-16 제정
		단양군	단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3-29 제정
	충남 (11)	공주시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9-01 제정
		서산시	서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1-14 제정
		태안군	태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2-12 제정
		아산시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2-26 제정
		논산시	논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3-11 제정
		예산군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4-05 제정
		부여군	부여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11-28 제정
		계룡시	계룡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3-20 제정
		천안시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6-21 제정
		서천군	서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6-04-10 제정
		당진시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2-15 제정
	전북 (12)	군산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7-03 제정
		전주시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7-25 제정
		익산시	익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9-27 제정
		진안군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0-11 제정

구분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 · 개정일
		부안군	부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0-13 제정
		남원시	남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	2023-10-18 제정
		완주군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4-11 제정
		장수군	장수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6-17 제정
		김제시	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9-27 제정
		고창군	고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3-12 제정
		임실군	임실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4-24 제정
		순창군	순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10-15 제정
	전남 (7)	순천시	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0-04 제정
		여수시	여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0-31 제정
		목포시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2-18 제정
		담양군	담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4-19 제정
		신안군	신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3-12 제정
		영광군	영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8-08 제정
		장성군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6-03-25 제정
	경북 (12)	안동시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7-07 제정
		영양군	영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9-27 제정
		영천시	영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0-13 제정
		청도군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1-16 제정
		김천시	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1-16 제정
		구미시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2-27 제정
		영주시	영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3-08 제정
		경주시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7-12 제정
		고령군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5-05-13 제정
		칠곡군	칠곡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5-09-30 제정
		문경시	문경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5-10-15 제정
		성주군	성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2-29 제정
	경남 (12)	양산시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9-07 제정
		하동군	하동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9-20 제정
		진주시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9-21 제정
		김해시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09-21 제정
		남해군	남해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1-07 제정
		사천시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2-21 제정
		의령군	의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2-27 제정
		거제시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3-12-28 제정
		합천군	합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03-14 제정
		창원시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11-15 제정
		밀양시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5-02-27 제정
		함안군	함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024-10-16 제정